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정 관

2020. 4. 1.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1999. 03. 27. 제정
2005. 05. 06. 개정
2013. 02. 15. 개정
2020. 04. 0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5.5.6.>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2.15.>

제3조(목적)

본 협회는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Association Internationale le de Theatre pour l'Enfance et le Jeunesse, 약칭 ASSITEJ)의 창립취지에 따라 아동·청소년 연극의 발전과 교육, 지도에 힘쓰며 회원 상호 간 교류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내적으로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 혹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개정 2013.2.15.>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아동·청소년 연극제 개최
2. 아동·청소년 연극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 행사 개최 및 참가 <개정 2005.5.6.>
3. 아동·청소년 연극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서적과 자료의 발간 <개정 2020.4.1.>
4. 아동·청소년 연극 박물관 및 회관 설립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운영 <개정 2013.2.15.>
5. 회원간 교류 확대 <신설 2005.5.6.>
6. 사회공헌사업 <신설 2013.2.15.>
7. 아동·청소년 연극 발전을 위한 예술교육 <신설 2020.4.1.>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3.2.15., 2013.2.15.>

제5조(수익사업)

- ①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본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부처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15.>

제6조(이익의 제공)

- ①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 ① 본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5.5.6., 2013.2.15.>
- ② 입회 및 회원자격 유지를 위한 시행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5.5.6.><개정 2013.2.15.>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킨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 ①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이사 8인 이상 12인 이하(종사자 대표 1인 이상 또는 서비스 수혜자 또는 관련 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둔다) <개정 2013.2.15.>
4. 감사 2인
5. 기타 <개정 2013.2.15.>

제13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2.15.>
- ②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시행 규정에 의거한다. <개정 2013.2.15.>
-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 및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삭제 2013.2.15.>

제17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이사는 연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05.5.6., 2013.2.15.>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13.2.15.>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개정 2013.2.15.>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이사장의 직무 대행)

- ① 이사장의 유고 및 결위 시, 부이사장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15.>
- ② 제①항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대행체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 ③ 부이사장, 이사, 감사가 유고 시에는 차기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2.15.>

제4장 총 회

제20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연도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2.15.〉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사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22조(총회의 소집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④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 ③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장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15.〉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2.15.>

제27조(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사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④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 ③ <삭제 2013.2.15.>

제29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 ①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처 장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15.>

제34조(수입 등) <개정 2013.2.15.>

- ① 본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2.15.>
-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제35조(차입금)

본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출자 및 용자) <신설 2013.2.15.>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결의를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 후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37조(회계연도) <개정 2013.2.15.>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 편성) <개정 2013.2.15.>

본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결산) <개정 2013.2.15.>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개정 2013.2.15.>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개정 2013.2.15.>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제7장 사 무 부 서

제42조(사무국) <개정 2013.2.15.>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법인해산 및 청산) <개정 2013.2.15.>

- ① 본 협회가 해산하거나 청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5.>
- ② 본 협회가 해산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 혹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개정 2013.2.15.>

제44조(정관변경) <개정 2013.2.15.>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6., 2013.2.15.>

제44조(업무보고) <삭제 2013.2.15.>

제45조(규칙제정) <삭제 2005.5.6.>

부칙(2013.2.1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